



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중량물 취급 시 위험방지

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

구분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	
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	제385조	중량물 취급
	제386조	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
	제387조	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
	제388조	사용 전 점검 등
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	제389조	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
	제390조	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
	제391조	하적단의 간격
	제392조	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
	제393조	화물의 적재

※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.



☑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·위험 예방 조치

☑ 중량물 취급

- 중량물을 운반,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·운반용구(이하 “하역운반기계등”)를 사용. 다만,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



☑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

-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
 - 구름멈춤대, 빼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
 -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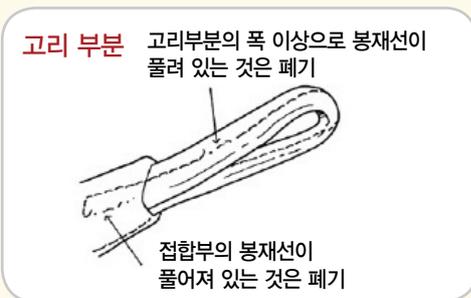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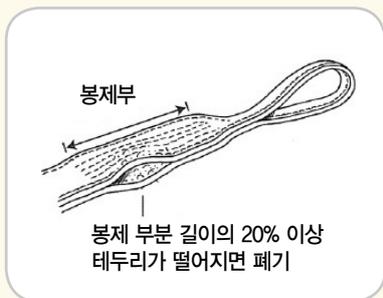
작업받침대 사용

☑️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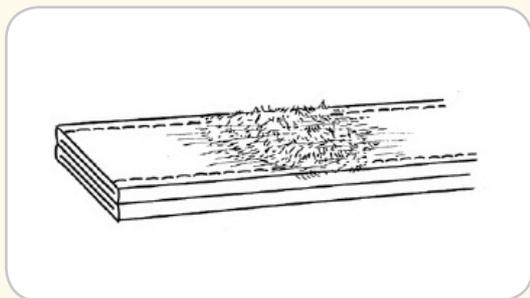
- 다음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, 고정용으로 사용금지
 - 꼬임이 끊어진 것
 -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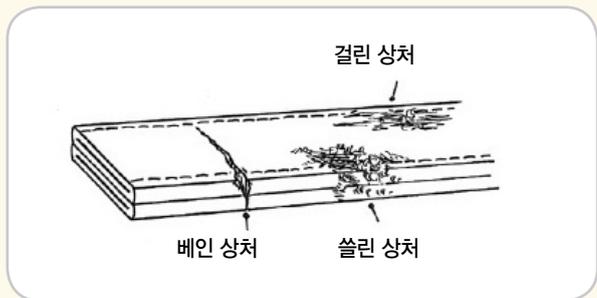
• 벨트 박리



• 결이 일어남



• 손상



☑️ 사용 전 점검 등

-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

☑️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

- 화물 중간 빼내기 금지(짐이 무너져 사고 위험)
- 직선으로 깊이 파내기 금지 및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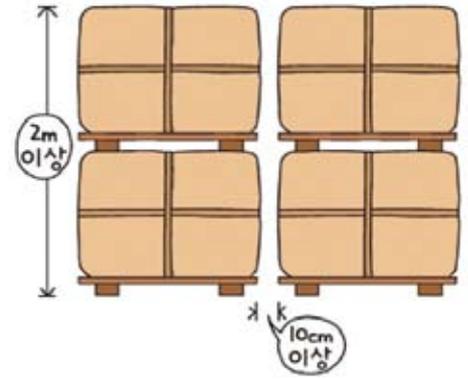


☑️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

- 작업장 통로 위험한 부분 조명 설치
- 부두 안벽 선을 따라 통로 설치시 폭 90cm 이상
-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으로서 다리 또는 선거(船渠) 갑문(閘門)을 넘는 보도(步道) 등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

하적단(포장, 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)의 간격

-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으로하여 10cm 이상으로 함



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

- 하적단 붕괴 또는 화물 낙하 위험 사전 조치사항
 - 하적단 로프 결속 및 망을 씌
 - 하적단을 기본형으로 쌓음 :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
 - 하적단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,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됨



화물의 적재 시 준수사항

-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
-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벽에 기대지 말 것
- 불안전한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
-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



3단이상 고단 적재(X)



안정된 높이(2단) 적재(O)

「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」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,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,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, 위험성평가,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.